

5.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

[제1조] 목적

이 규정은 제 1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관리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2조] 자격

-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, 최근 5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2회 이상 참석하고,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. (평점 계산은 제3장 제10조 참조)
-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.
-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. 해외체류기간 중에 갱신시기가 겹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갱신시까지 분과전문의 자격은 정지된다.

[제3조] 자격갱신의 방법

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자격갱신을 추천한다.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,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[제4조] 서류제출

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한다.

-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
-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(KMA 교육센터(<http://edu.kma.org>)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,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,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)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
-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

[제5조] 연수교육 인정한계 및 평점 기준

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(제3장)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제6조]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

-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,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. 단,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,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

하거나,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.

-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,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.

[제7조]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

-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. 단,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,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,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,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고,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 단,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.

[제8조] 보칙

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